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방개혁 2.0 기본계획」상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부대개편 취지를 적절히 반영하고, 방공유도탄사령부의 능력 증강과 병행하여 주 임무인 다층방어체계로 확장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작전에 부합하도록 부대 명칭 및 임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군조직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(2022. 0. 00. ~ 0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

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”을 “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”으로 한다.

제1조제1항 중 “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(地對空) 방어임무”를 “전략적·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·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”로 하며, “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”를 “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“공군방공유도탄사령관”을 “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</u>	<u>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</u>
제1조 (설치와 임무)	제1조 (설치와 임무)
① <u>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</u> <u>한 지대공(地對空) 방어임무를</u> <u>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방</u> <u>공유도탄사령부(이하“사령부”</u> <u>라 한다)를 둔다.</u>	① <u>전략적·작전적 공중위협을 감</u> <u>시하고 복합·광역 다층 미사일</u> <u>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----</u> <u>----- 공군미사일방어사</u> <u>령부-----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실	
연 락 처	(02) 748 - 6556